인허가

대남광산 채굴계획인가서

충청남도지사 발급 · 2023년 7월 12일

광산 소재지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채굴계획 인가서

채굴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채굴권의 표시	광구 소재지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등록번호		광업지적	청양 지적
	광종명	금광, 은광	면적	276 헥타르
광산명	대남광산			

「광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충 청 남 도 지 사 (충청남도지사인)

※ 인가조건

1. 채굴계획인가의 대상면적은 대상광구의 면적과 같은 것으로 하며, 채굴위치(갱구, 저광장, 폐석적치장)는 충남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면적 : 927㎡입니다.
   ※ 본 인가는 광업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협의 없이 채굴계획만 인가한 것으로, 실제 채굴 행위 전 관련기관으로부터 개별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득한 후 광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2. 금속광산의 주된 광해인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갱내수 수질측정 결과서(공인검사기관 발행)를 매월 광물생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광산을 개발함에 있어 채굴계획서에 기술한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채굴 위치 또는 시설 배치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변경도면(사업대상지 측량실측도) 제출 및 개별법(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한 허가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채굴 행위 시 발생되는 각종 민원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6. 광해가 우려되거나 광해 발생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광해 방지(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7. 채굴계획 인가 후 매월 광물생산보고서 3부(광물생산실적이 없을시 사유 기재 후 제출)를 청양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측량실측도 1부